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림복원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훼손된 산림을 효율적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산림자원법」이 개정(법률 제16198호, 2019. 1. 8. 공포, 시행) 됨에 따라 산림기술법에 규정된 산림복원사업 범위 등을 정비하여 법률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산림복원사업을 정의하는 법률의 종류 확대(안 제13조제1항제1의타)
- 나.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요건 및 업무범위에 산림복원 추가(안 제10조 관련 별표3)
- 다.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업무범위에 산림복원 추가(안 제12조의 제3항 관련 별표4)
- 라. 산림기술자의 배치기준에 산림복원 추가(안 제15조의제1항 관련 별표5)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3조(산림사업 설계·감리의 범위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9., 2021. 6. 8., 2023. 9. 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산림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

가. 3만제곱미터 이상의 조림사업

나. 3만제곱미터 이상의 벌채사업

다. 1백만제곱미터 이상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라.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숲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사업

마. 임도사업.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이하 “사방사업”이라 한다).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의 조성(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유아숲체험원등 조성사업”이라 한다).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가 4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사목부

터 카목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이라 한다)

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도시숲등조성·관리사업”이라 한다)

차.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수목원 조성사업”이라 한다)

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의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수목장림 조성사업”이라 한다)

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사방사업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법」에 따라 자연적·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산림복원사업”이라 한다)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제10조 관련)

기술 종류	기술 등급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산림 경영 기술자	기술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1. 산림 조사 및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기술 고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설계 · 시공 및 감리 가. 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산림조성사업"이라 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다. 산림욕장의 조성사업 라. 도시숲등조성·관리사업
	기술 중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기술 초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기능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 시공 및 관리
	기능 1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1. 산림조성사업 2.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기능 2급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6주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기능등급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산림욕장의 조성사업 4. 도시숲등조성·관리사업
산림	기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	1.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설계

공학 기술자	특급	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시공 및 감리 가.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사업(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나. 임도사업 다. 사방사업 라. 산지의 보전·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복구 등에 관한 사업 마.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 바. 유아숲체험원등 조성사업 사. 수목원 조성사업 아. 수목장림 조성사업 2.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과 관련된 표고(標高) 및 평균경사도 조사와 재해위험성 검토
	기술 고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1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4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기술 중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1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기술 초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 또는 자연생태복원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 또는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녹지 조경 기술자	기술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1.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설계 · 시공 및 감리 가. 수목원 조성사업 나. 도시숲등조성·관리사업 다. 숲길 조성사업 라.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2.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중 건당 공사비 규모가 10억원 이하인 사업의 시공 및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억원 이하인 사업의 설계 가.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 (숲길은 제외한다) 나. 수목장림 조성사업
	기술 고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기술 중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기술 초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산림 복원 기술자	기술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복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1. 산림복원사업 대상지조사 2. 산림복원사업 타당성평가 3. 산림복원사업 설계·시공·감리
	기술 고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복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복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1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복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4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복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기술 중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복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복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복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1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복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기술 초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 또는 자연생태복원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복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 또는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복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복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복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	---	--

비고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란 기술종류별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녹지조경기술자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조경공사, 조경식재공사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의 설계·시공·감리업무를 포함한다.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 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3.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이란 산림교육원과 법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을 말한다.
4. "산림공학 교육과정"이란 산림공학기술자의 업무 범위와 관련되는 산림기술 교육과정을 말한다.
5.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다른 산림공학기술자 기술등급의 자격 및 경력요건을 갖추면 추가로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다른 기술등급의 산림공학

기술자 자격을 가질 수 있다.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3. 9. 26.>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업무 범위(제12조제3항 관련)

구분	세부 분야	등록 요건			업무 범위
		기술인력	시설	자본금	
종합업	종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 1.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자격과 기술특급 산림공학 기술자 자격과 기술특급 산림복원기술자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 1명을 포함한 산림기술자 5명 이상. 다만, 녹지조경기술자는 1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기술고급 산림경영기술자 자격과 기술고급 산림공학 기술자 자격과 기술고급 산림복원기술자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 2명을 포함한 산림기술자 6명 이상. 다만, 녹지조경기술자는 1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사무실	5천만원 이상	1. 산림 조사 및 산림경영 계획서 작성 2.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과 관련된 표고(標高) 및 평균경사도 조사와 재해위험성 검토 3.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및 안전성 분석
전문업	산림경영	1.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2020년 11월 29일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나.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사무실	해당 없음	1. 산림 조사 및 산림경영 계획서 작성 2.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설계·감리 및 안전성 분석 가. 산림조성사업 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산림생태·	1.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 기술고급 이상인	사무실	해당 없음	1.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과 관련된 표고 및

	공학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2020년 11월 29일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나.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			평균경사도 조사와 재해위험성 검토 2.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설계·감리 및 안전성 분석 가. 임도사업 나.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사업(산불 예방·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다. 사방사업 라. 산지의 보전·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복구 등에 관한 사업
	산림휴양	1.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2020년 11월 29일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나.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다.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사무실	해당 없음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 설계·감리 및 안전성 분석 1.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 2. 유아숲체험원등 조성사업 3. 수목장림 조성사업
	녹지조경	1.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2. 2020년 11월 29일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사무실	해당 없음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 설계·감리 및 안전성 분석 1. 수목원 조성사업 2. 도시숲등 조성·관리사업 3. 숲길 조성사업 4.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 경영기술자,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나.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 경영기술자,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2명 이상			
	산림 복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 복원기술자 1명 이상 나.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 복원기술자 2명 이상	사무실	해당 없음	1. 산림복원사업의 대상지 조사 및 타당성평가 2. 산림복원사업의 설계· 감리

비고

1. 기술인력

가. "기술인력"이란 산림기술용역업체에 상시 근무하면서 해당 사업의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을 말하며, 법 제12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요건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나. 산림기술자가 사망, 신체·정신상의 장애 또는 병역의무 이행 등으로 상시 근무가 불가능하여 기술인력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당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가 추가로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를 이미 고용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기술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라. 전문업을 등록할 때 기술인력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기술특급의 산림기술자 1명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기술종류의 기술고급 산림기술자 1명과 기술초급 산림기술자 1명을 갖춘 것으로 본다.
- 2) 2개 이상의 전문업을 등록하려는 경우나 이미 등록한 산림기술용역업체가 다른 전문업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다른 전문업의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기술종류 및 기술등급이 같거나 그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를 이미 고용하고 있을 때에는 1개의 전문업에 한정하여 해당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시설: 사무실은 산림기술용역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사무실을 말한다.

3. 자본금

가. "자본금"이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12. 16.>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제15조제1항 관련)

구분	사업종류	규모	배치기준
조사	산림 조사	5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5만제곱미터 초과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	5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5만제곱미터 초과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재해위험성 검토	1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1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설계	조림	2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1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5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50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숲가꾸기	1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3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7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70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벌채	5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1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산림병해충 방제	1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3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30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임도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3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사방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5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산지복구	복구비 예치금액 1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복구비 예치금액 3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복구비 예치금액 2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복구비 예치금액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산림복원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복원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복원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복원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복원기술자 1명 이상
자연휴양림 등 조성 (숲길은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 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제외한다)	공사비 2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유아숲체험 원등 조성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 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 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 술고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특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숲길 조성	공사비 1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 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3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 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 술고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특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공사비 1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 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3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 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 술고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특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수목장림 조성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 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산림 사업	조림	전체 사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시행			1.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기능 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국유림만 해당한다)
	숲가꾸기	600만제곱미터 이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기능 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국유림만 해당한다)
		600만제곱미터 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1.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기능 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국유림만 해당한다)
	벌채	연간 벌채량 5천세제곱미터 이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이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원목생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연간 벌채량 5천세제곱미터 초과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산림병해충 방제	전체 사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이상 2. 해당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국유림만 해당한다)
	임도	공사비 3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3억원 초과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산림복원	공사비 3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복원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3억원 초과	기술중급 이상 산림복원기술자 1명 이상
	자연휴양림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

	등 조성 (숲길은 제외한다)		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유아숲체험 원등 조성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 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 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숲길 조성	공사비 3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 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3억원 초과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 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공사비 3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 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3억원 초과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 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수목장림 조성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 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감리	조림	2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5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50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숲가꾸기	1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7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70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벌채	5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산림병해충 방제	1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3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30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임도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사방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산지복구	공사비 3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력 1.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력 1.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산림복원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복원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복원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복원기술자 1명 이상
자연휴양림 등 조성 (숲길은 제외한다)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유아숲체험 원등 조성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 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 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숲길 조성	공사비 1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공사비 1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특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수목장림 조성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비고

1. 법 제12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이 정지된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요건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과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과된 누적벌점이 7점 이상인 산림기술자는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에서 제외한다.
2. 사방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산림기술자 배치기준은 「사방사업법」 제8조에 따른다.
3. 숲가꾸기사업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규모는 같은 필지 또는 연접한 사업지역의 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4. 복구비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한 비용을 말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복구비 예치가 면제된 경우에는 산지전용 등을 한 면적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5. 발주청은 산림사업의 규모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될 산림기술자의 등급, 종류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는 이 영 시행 전에 별표3에 따라 산림공학기술자를 취득한 사람이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산림복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취득을 신청하는 경우 산림공학기술자와 동일한 기술등급의 산림복원 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후 3년까지는 이 영 시행 전 별표4의 종합업과 산림생태공학전문업에 등록한 업체가 산림복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는 이 영 시행 전에 별표3에 따라 산림공학기술자를 취득한 사람이 별표5의 산림복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산림사업 설계·감리의 범위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말한다.	제13조(산림사업 설계·감리의 범위 등) ① ----- -----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산림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가. ~ 카. (생략)	1. ----- ----- ----- -----
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사방사업법」, 「산지관리법」에 따라 자연적·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산림복원사업”이라 한다)	가. ~ 카. (현행과 같음) 다. ----- ----- 「 <u>산지관리법</u> 」, 「 <u>산림자원법</u>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	
연 락 처	(042) 481 - 8858